# 공무원 외부강의등 신고여부 특정감사결과 보고

청탁금지법 제10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에 의거 우리 구 공무원의 외부강의등 적정신고 여부에 대한 감사실시 결과 보고임.

▷ 기획감사실-12860(2022.10.7.)호 관련

## I 추진근거

- O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제10조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조
- 「공무원 행동강령」제15조(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)
- 「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행동강령」제16조(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)

# Ⅱ 감사개요

○ 감사기간 : 2022. 10. 17. ~ 10. 25. (8일간)

※ 사전자료수집(관련기관 자료요청): 2022.10.17. ~ 10.21.(5일간)

O 대 상 : 외부강의등 신고대상 전 공무원

O 감 사 반 : 청렴감사팀장 외 1명

**○** 범 위 : 2021. 10. 1. ~ 2022. 9. 30.

기간 중 외부강의 회의 등 신고대상 건

#### 이내 용

- 외부강의등 대가기준 초과 수령 여부
- 신고대상 외부강의등 신고사항 이행 실태
- 지나친 외부강의등으로 직무수행 소홀 여부 점검 등
- 외부강의 요청 기관(단체)에 대한 우리 구 공무원 실시사항 조회로 신고누락 방지
- 결 과 : 지적사항(위반사항) 없음

# Ⅲ 감사결과

## □ 총 평

- 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에 따라 직원 외부강의등 신고 및 초과사례금 수수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,
-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고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 등에 대해서는 사전 (사후)신고 절차 이행에 적정을 기하는 등 위반사항이 없었음.
- 매년 지속적인 홍보 및 감사 실시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온 바, 향후에도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외부강의등에 대한 신고누락 등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하고자 함.

#### □ 외부강의등 신고현황

○ 총괄 현황 ► 상세현황 [붙임1] 참조

부 서	총 신고건수	신 고 대 상					
		강의건수	강의자수	총 사례금	평균 사례금		
10개	25건	18건	9명	3,050천원	169천원		

※ 비대상(법령에 근거한 위원회, 요청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) 7건 제외

#### O 유형별·직급별 현황

유형별(건)			직급별(명/건)					
계	강의 · 강연	발표 · 토론 · 심사 평가 · 자문 · 의결	계	4급	5급	6급	7급이하	
18	9	9	9/18	-	1/6	4/6	4/6	

- 겸직허가 현황 ► 3개부서 4명
- □ 감사결과 및 향후 계획

## ✓ 직무와 관련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의 신고 누락 여부

○ 행동강령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대가여부에 관계없이 '직무관련성'이 있고, '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'이거나 '회의 형태'인 경우로 신고누락 사항은 없음.

#### ▷ 향후계획

- <u>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 사후신고</u> 하도록 교육 및 홍보하여 신고에 혼란이 없도록 조치.

#### ✓ 대가기준을 초과한 사례금 수령 여부

○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5조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1시간 400천원, 1 시간 초과 시 최대 600천원으로, 대상기간 중 사례금은 총 9명 18건 3,050천원이며 기준초과 내역은 없음.

#### ▷ 향후계획

- 대상기관(단체)에서 기준을 초과하여 사례금 지급시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

## ✓ 지나친 외부강의등으로 직무수행소홀 여부

○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등 참석자는 담당직무 수행과 관련한 경우 실시 하였고 기타 근무시간 외 활용 등으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고, 월 3회를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에 참석한 경우는 없어 <u>직무수행 소홀</u> 사항은 없음.

#### ▷ 향후계획

- 부서장은 외부강의 등 요청 시 관련공문 검토로 직무수행 소홀사항이 없도록 참석여부를 신중하게 결정 ☞ 신고시 요청기관 공문 반드시 첨부
- 외부강의 등 횟수를 월 3회로 제한하고 직무상 불가피할 경우 구청장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**사전 검토·숭인 관리**

# Ⅳ 행정사항

- 외부강의등 신고 이행여부 지속관리 및 신고절차 수시 공지
  -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은 마친 날로부터 10일이내 신고
  - 법령(조례·규칙)상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회의 참석 시 외부강의 신고 제외
  -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자인 경우 신고 제외
- 새올행정시스템의 연계기안을 통한 외부강의등 신고 철저
  - ※ 새올행정〉 감사〉 외부강의등〉 사용자〉 부서 외부강의등 신고등록〉기안(수신처: 기획감사실)